

인천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2162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4. 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B의 상속지분만큼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11. 9. 접수 제4571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는 B에게 2014. 7. 17. 200만 원을, 2014. 11. 21. 1,000만 원을 각 이율 29.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D 주식회사는 2016. 6. 17. A 주식회사에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17.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2022. 3. 4. 기준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은 28,176,888원이다.다. 피고와 B의 아버지인 E이 2021. 5. 14. 사망하자 피고는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 주식회사는 2022. 3. 4. 피고를 상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B는 수원지방법원 2021개회129610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2. 4. 28.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10. 1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의 위 대여금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았다.

바. B가 A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는데,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권리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회생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 주식회사가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회생채무자 B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